



중대질병보험 시범규정 발표 예정

이소양 연구원

■ 9월 25일 북경상보(北京商報)는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중대질병보험 시범규정 수정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 「성향(城鄉)주민중대질병보험제도입관련통지」를 주요 보험회사에게 통보했다고 보도함.

- 동 통지는 중대질병보험 시범규정을 포함하며,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발표한 「성향(城鄉)주민중대질병보험제도도입관련지침」¹⁾에 이어 주요 보험회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10월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.
-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각 지방정부의 기본의료보험기금 잉여자금 및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중대질병보험 시범규정을 두 가지(A 및 B)로 분리하여 제정함.

■ 중대질병보험 시범규정 A와 B는 보험가입자, 피보험자, 보험료 출처, 보험금 지급방식 및 지급률 등에서 동일하게 제정되었음.

- 첫째, 지방정부(보험가입자)는 기본의료보험기금의 잉여자금을 재원으로 저소득층인 농민 및 도시 미취업자의 중대질병의료비용을 보상하는 중대질병보험을 보험회사로부터 구입
- 둘째,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 요청 및 관련 증명 자료를 수취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보험금 지급 여부를 통보해야 하며, 보험금 지급사유 충족 시 10일(통보 날부터)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아닌 경우 보상 거절 사유서를 발송해야 함.
- 셋째, 지급률이 90%를 넘는 경우 해당 초과 보험금을 기본의료보험기금이 지원하는 반면, 80%를 지급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잉여자금을 반환해야 함.²⁾
 - 보험회사가 중대질병보험을 운영하기 위해 지출하는 관리비용, 시설비용, 홍보비용, 조사 및 사정 비용 등 사업비가 보험료에 차지하는 비율은 보험료의 5%를 초과하지 못함.

1) 동 지침 내용은 「저소득층을 위한 중대질병보험제도 도입」(보험연구원, 해외금융뉴스, 제198호)을 참조바람.

2) 중대질병보험 지급률의 상한 및 하한은 각각 90% 및 80%로 한정.

- 이외에 보험회사는 위법위규가 초래하는 중대질병의료비용 및 외국(홍콩, 마카오 및 대만 포함)에서 치료로 발생한 중대질병의료비용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음.

■ 반면, 중대질병보험 시범규정 A와 B는 해당 보험회사와 지방정부의 협상에 따라 보상범위, 보험료 및 보험금 등에서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.

- 통지에 따라 시범규정 A의 보상범위는 입원비용, 전문 진료비용 및 일반 진료비용을 포함하는 반면 시범규정 B의 보상범위는 일반 진료비용을 포함하지 않음.
 - － 전문 진료비용 및 일반 진료비용의 내용은 보험회사와 지방정부 간의 협상에서 별도로 결정됨.
- 보험회사는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정보(피보험자의 성명, 성별, 생년월일 및 ID 번호 등)를 바탕으로 중대질병보험의 보험료를 산정하고 지급률 변동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음.

■ 보험전문가들은 중대질병보험 도입으로 건강보험 수입보험료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, 지급보험금 상승과 중대질병보험과 중복되는 보험의 수입보험료 하락 우려도 제기됨.

- 건강보험 수입보험료는 2000년부터 연평균 24%의 증가율로 상승, 2011년 약 700억 위안을 기록 하였으나 인보험 수입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%에 그쳐 선진국(20%)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.
- 중국인민대학교 보험학과 위려(魏麗)교수는 중대질병보험 도입으로 건강보험 수입보험료는 약 400억 위안 증가할 수 있지만 이에 따른 지급보험금도 크게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함.
- 한편, 중대질병보험은 일부 상업의료보험과 중복될 수 있는 담보가 있기 때문에 일부 상업의료보험의 해약률 증가에 따른 수입보험료 하락 우려가 있다고 지적

(북경상보, 09/25, 신량망, 09/26, 하현망, 09/26 등)